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에는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으로서,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며,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상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상품특징
 -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면제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 입 자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제외)으로 만 17세 이상의 국민인 거주자1인 1계좌
상 품 유 형	저축예금
가 입 금 액	제한 없음(계좌 개설시에는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가 입 기 간	제한 없음
거 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규 :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영업점에서의 출금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거 래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거래한도: 최대 200만원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타행이체 및 당행 타인명의 이체,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타행 또는 핀테크를 통한 오픈뱅킹 출금이체 통합한도 ※ 거래한도 제한 해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방문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요 - '24.07.24 이전 개설 거래한도 제한 계좌에 한해 '24.08.27 까지 기존요건* 적용 가능 * 기존요건 : 계좌 신규일로부터 1개월 후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충족 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거래한도 제한 해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제 신청일 전일 기준 3개월간 동 계좌의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 ② 동 계좌를 통해 가입한 당행 예적금·신탁·산금채·펀드 계좌를 해제신청일 기준 1건 이상 보유 -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거래한도 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뱅킹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안내 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적 용 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 *'홈페이지(www.kdb.co.kr) > 금융상품몰 > 페이지 하단 금리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자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원가식 • 매월 넷째주 금요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함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일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계산기간 : 전월 넷째주 금요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의 다음 영업일 ~ 당월 넷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전일 • 이자계산방법 : 매일 최종 잔액 x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해당 일자별 적용이율 																					
자 동 이 체	<p>자동이체 등록 가능</p> <p>※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p>																					
부 가 혜 택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단, 매월 기준 1천건 초과 타행이체 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초과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 •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table border="1" data-bbox="351 1691 1468 1892"> <thead> <tr> <th colspan="3">현금인출¹⁾</th> <th colspan="2">계좌이체²⁾</th> <th colspan="2">현금입금³⁾</th> </tr> <tr> <th>당행 기기</th> <th>타행 기기</th> <th>NICE CD기</th> <th>당행 기기</th> <th>타행 기기</th> <th>당행, 우체국·하나은행 기기</th> <th>타행 기기</th> </tr> </thead> <tbody> <tr> <td>면제</td> <td>면제</td> <td>면제</td> <td>면제</td> <td>면제</td> <td>면제</td> <td>해당 금융기관기준</td> </tr> </tbody> </table> <p>1)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서 현금인출 2)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서 당행/타행계좌로의 입금(이체) 3) 당행계좌로 현금입금</p> <p>※ 타행범위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p>	현금인출 ¹⁾			계좌이체 ²⁾		현금입금 ³⁾		당행 기기	타행 기기	NICE CD기	당행 기기	타행 기기	당행, 우체국·하나은행 기기	타행 기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해당 금융기관기준
현금인출 ¹⁾			계좌이체 ²⁾		현금입금 ³⁾																	
당행 기기	타행 기기	NICE CD기	당행 기기	타행 기기	당행, 우체국·하나은행 기기	타행 기기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해당 금융기관기준																

구 분	내 용
양도 및 명의변경	불가능
담 보 제 공	불가능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거 래 중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단, 사고등록계좌, 자동이체계좌, 집합투자증권 연결계좌 및 비대면채널을 통한 근거래좌는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에서 제외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휴면예금 및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p>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p>
세 제 혜 택	<p style="text-align: center;">가능</p>	<p>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p>
연계·제휴서비스	<p>해당사항 없음</p>	

3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시장상황,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산업은행 수신기획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 (1588-1500), 금융민원센터(02-787-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www.fss.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